

<최종보고 핵심 요약자료>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

2023. 10. 31.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 연구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연구과제명 :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및 연구예산 : '23. 4. 28. ~ '23. 11. 27. / 4천만원
- 연구진
 - (연구책임) 최현수 연구위원(사보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지원 총괄)
 - (원내) 임완섭 연구위원(보훈정책 연구), 오다은 전문연구원(신설변경 협의지원단)
 - (원외) 윤승비 교수(서울기독대학교, 전 보훈교육연구원)
- 연구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착수보고 : '23. 5. 9.
 -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내용 구성 : '23. 5월 ~ 6월
 -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담당자 협의체(서면/대면, 광역 별도) : '23. 6월 ~ 7월
 - 기초 지자체 전수 대상 보훈수당 실태조사 수행 : '23. 8. 7 ~ 9. 22.
 - 중간보고 : '23. 10. 6. (시군구협의회 복지분권위원회 보고)
 - 1차 최종보고 : '23. 10. 31. (시군구협의회 복지분권위원회 보고 / 세종)
 - 2차 최종보고 : '23. 11. 3. (시군구협의회 회장단 보고 / 서울)
 - 최종보고서 제출 : '23. 11. 27.
 - 최종보고서 수정 및 인쇄 발간 : '23. 12. 10.

2. 연구내용 및 최종보고서 목차 구성

□ 주요 연구내용

- (연구내용 1) 보훈수당 관련 이론적 검토 및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역할 분담 관련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개념 중심으로, 최근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전수 파악과 관련하여 지자체 보훈수당의 범위 및 지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보훈정책 이론 및 보충성 원리에 따른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지급 관련 역할 분담 논리 검토 (* 미국과 캐나다 해외사례 조사 및 검토)
- (연구내용 2) 국가보훈부 보훈대상 유형별 보훈수당 관련 지원제도 현황 분석
 - 보훈보상 관련 국가보훈부의 지원제도 현황과 운영체계, 보훈대상자별 지급수준 비교 등 현황 분석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기반으로 국가보훈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최저소득 보장방안 등 중앙정부 정책 동향 분석
- (연구내용 3)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수당 관련 지원제도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 (연구내용 4)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수당 관련 지원제도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연구내용 5) 기초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및 조정방안 제안
 - 기초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관련 조정원칙 및 고려사항 등 가이드라인 제시
 - 광역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 제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관련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 최종보고서 목차 구성

제1장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보훈수당 관련 이론적 검토

제3장 중앙정부 보훈수당 현황 및 추진방향

제4장 광역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제5장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제1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설계 및 추진 경과

제2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6장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

제1절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2절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

3. 주요 연구 수행결과 (지자체 보훈수당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중심)

가.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설계 및 추진 경과 (제5장 제1절)

□ 실태조사 설계 및 추진 과정

- 226개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병행한 사전조사 2회와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담당자 간담회 1회, 그리고 광역 지자체 보훈수당 담당자 간담회 1회를 실시함
- 1차 사전조사
 - 연구진이 사전에 마련한 초기 조사표는 국가보훈부의 보훈관련 수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기초 지자체 보훈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 오류, 누락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담당자 간담회
 - 1차 사전조사에 참여했던 지자체 보훈수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실시하여 1차 사전조사 의견을 공유하고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조사표 구성, 조사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중심으로 2차 사전조사표(안)을 구성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담당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함
- 2차 서면조사
 - 1차 사전조사와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2종(보훈수당, 특별수당)으로 구성하여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 오류 및 누락사항과 개선방안, 지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광역 지자체 보훈수당 담당자 간담회
 - 시도와 시군구 매칭 보훈수당 사전 고려 및 추후 광역 보훈수당 현황과의 연계 분석 등을 위하여 광역 지자체 보훈수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초 및 광역 보훈수당 실태조사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기초 지자체 및 광역 보훈수당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이상과 같은 과정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표를 3종(본인 보훈수당 및 유족 보훈수당, 특별(위로)수당)으로 구성하였으며, 광역은 별도의 조사가 아닌 광역의 보훈수당 관련 사업 및 예산자료를 수합하는 방법으로 수행함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실태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체 추진경과〉

구분	내용	시기	비고
1차 사전조사	일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의 오류, 누락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3.6.21.~6.30.	조사표 1종
기초 지자체 간담회	1차 사전조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구조, 조사표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3.7.7.	
2차 사전조사 준비	1차 사전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사전조사표를 구성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확인함	'23.7.12.~7.17.	
2차 사전조사	1차 사전조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 오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3.7.18.~7.24.	조사표 2종
광역 지자체 간담회	시도-시군구 매칭 보훈수당 사전 고려 및 추후 광역 보훈수당 현황과의 연계 분석 등을 위하여 광역 지자체 보훈수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함	'23.7.31.	
본 조사 실시	사전조사 2회,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2회 등을 거쳐 조사표를 최종 도출하였으며,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훈수당 실태조사를 실시함 또한 회신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회신 및 수정을 요청함	'23.8.7.~9.22.	조사표 3종

□ 최종 조사표 구성

- 실태조사표는 본인(당사자) 대상 실태조사, 유족대상 실태조사, 특별(위문)수당 등 3가지로 최종 구성함
- 본인(당사자)과 유족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다수의 지자체에서 광역 및 기초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는 본인 사망 시 유족승계가 되지 않아 별도로 미망인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으로 구분하였으며,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 구분을 참고함

-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 유족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승계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과 유족대상수당으로 구분하였으며, 유족대상수당의 대상자 범위는 본인(당사자) 실태조사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와 동일함
- 특별(위문)수당은 사망위로금과 3·1절, 호국보훈의 달(6월), 광복절, 명절에 위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유무로 구분함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실태조사표 구조〉

구분		조사문항
본인(당사자)대상 실태조사	기본정보	-기본정보(시도명, 시군구명, 담당자, 조례, 예산, 대상자 수 등) -대상별 수당지급 여부
	보훈수당	-등급별 차등여부 -연령별 차등여부
	참전명예수당	-거주기간 유무, 거주기간 -소득기준 여부, 소득기준
	기타	-지급방식 -지원수준
유족대상 실태조사	기본정보	-기본정보(시도명, 시군구명) -대상별 수당지급 여부
	미망인수당	-등급별 차등여부 -연령별 차등여부
	보훈수당	-거주기간 유무, 거주기간 -소득기준 여부, 소득기준
	기타	-지급방식 -지원수준
특별(위문)수당	기본정보	-기본정보(시도명, 시군구명) -대상 -금액
	사망위로금	
	3·1절	
	호국보훈의 달(6월)	
	광복절	
	명절	

주: 본인 및 유족대상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 실태조사 수행 후 지자체별 조사결과 보완

-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사업 요약자료 또는 예산설명자료와 광역 지자체에 소속 기초 지자체의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회신을 요청하여 확보된 자료와 회신한 조사표를 대조하는 검증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그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을 수행함(미회신한 기초 지자체 10곳 포함)
- 그 외에 검증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작성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을 수행함

나.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5장 제2절)

□ 서울특별시 및 25개 구

시도명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기념일 위문금 (3·1절, 419/518기념일, 6월, 광복절)
	월10만원	월100만원	월10만원	월20만원	월20만원	5만원~10만원
서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 자, 특수임무유공자	생존 애국지사 (2인)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	독립유공자(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미만 기초연금수급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4.19, 5.18유공자 본인 및 유족, 6.25참전용사 등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종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종 여부	금액 (원)	기종 여부	금액 (원)	기종 여부	금액 (원)		
종로구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5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5만원/명절 5만원
중구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거주기간 1개월	7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거주기간 1개월	7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5만원/명절 5만원 월동대책비 5만원~10만원(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용산구			50,000			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5만원/명절 5만원
성동구	제대군인, 장기복무 포함		50,000	제대군인, 장기복무 포함		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5만원/명절 3만원 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진구			50,000			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4만원/명절 3만원
동대문구		거주기간 1개월	50,000		거주기간 1개월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명절 3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인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중랑구			50,000			50,000		50,000				사망위로금 4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명절 3만원(추석만) 광복절 7만원(독립유공자)
성북구	제대군인 포함	거주기간 3개월	50,000		거주기간 3개월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2만원/명절 2만원
강북구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거주기간 3개월	5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거주기간 3개월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2만원/명절 2만원
도봉구		거주기간 1년	50,000		거주기간 1년	50,000	거주기간 1년	5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명절 3만원
노원구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50,000			50,000	거주기간 1개월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명절 2만원
은평구	제대군인 포함	거주기간 3개월	50,000		거주기간 3개월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명절 6만원
서대문구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5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50,000		5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명절 2만원
마포구		거주기간 3개월	50,000		거주기간 3개월	50,000	거주기간 3개월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명절 3만원 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양천구		거주기간 1개월	50,000			50,000	거주기간 1개월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 광복절 3만원(순국선열, 독립유공자)
강서구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5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2만원/명절 2만원
구로구			50,000			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2만원/명절 2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금천구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5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5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2만원/명절 2만원 광복절 온누리상품권 10만원(독립유공자)
영등포구			60,000			60,000		6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2.5만원/명절 2.5만원
동작구			50,000			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2만원/명절 2만원
관악구			50,000	고엽제후유의증 자 제외		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2만원/명절 2만원
서초구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7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70,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7만원/명절 7만원 참전유공자 위문금 45만원(1년이상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훈위문금 90만원 (서울시 및 서초구 수당 및 위문금 수령자 제외)
강남구*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80,000			80,000		80,000				
송파구			100,000			100,000		100,000				사망위로금 5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명절 2만원 65참전유공자 위문금 30만원(1년이상 거주자)
강동구		거주기간 1개월	50,000			50,000	거주기간 1개월	50,000				사망위로금 5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명절 3만원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미회신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

시도명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부산	월 3만원	월 10만원	20만원×2회(삼일절, 광복절)	1가구당 300만원*
	부산시 거주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부산시 거주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1명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배우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수당	위문수당
	대상여부	기준여부	금액(원)	대상여부	기준여부	금액(원)	기준여부	금액(원)	기준여부	금액(원)		
중구							만65세 이상	30,000				
서구							만65세 이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3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동구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입무유공자 제외	거주기간 1년 (독립유공자는 제외)	독립유공자 100,000 그 외 10,000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입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거주기간 1년 (독립유공자는 제외)	독립유공자 100,000 그 외 10,000	거주기간 1년	1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영도구							만65세 이상/차상위계층이하 (생계급여제외)	10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100,000		5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동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명절 4만원(저소득 국가유공자)
남구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30,000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30,000	기초생활수급자	2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해운대 구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100,000		6.25참전 50,000 월남참전 2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사하구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독립유공자 100,000 그 외 20,000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국가유공자 일부 대상		독립유공자 100,000 그 외 20,000	만65세 이상 /생계,의료,주 거급여 수급자	3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금정구							보훈금여금,고 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 제외	3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강서구							만 65세 이상	8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연제구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100,000	만 65세 이상	3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수영구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독립유공자 10,000 기초생활수급자 50,000 그 외 30,000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독립유공자 10,000 기초생활수급자 50,000 그 외 30,000		기초생활수급 자 50,000 그 외 3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사상구								3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생복결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장군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거주기간 1년 이상	50,000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거주기간 1년 이상	50,000	거주기간 1년 이상	200,000				

-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제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지정병원 이용 시 발생 의료비 중 본인 부담분 지원(비급여 제외) 지정병원 8개소 및 부산 관내 약국 청구분 입금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대구광역시 및 8개 구·군

시도명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월 3.5만원	월 10만원	연 100만원(본인부담금)
대구	65세이상의 대구시 거주자로 4.19유공자본인, 5.18민주유공자본인,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유족, 전몰군경·순직군경유족	65세이상의 대구시 거주자로 참전유공자본인, 전상군경본인, 무공수훈자본인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선순위자인 유족(배우자) 1인(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중구	4.19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65세 이상	35,000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 유족	65세 이상	35,000						사망위로금 1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
동구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65세 이상	35,000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 유족	65세 이상	35,000						사망위로금 10만원(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20만원 (10만원, 연2회)
서구	4.19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65세 이상	35,000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 유족	65세 이상	35,000						사망위로금 1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절 10만원(고령, 병환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남구	4.19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65세 이상	35,000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 유족	65세 이상	35,000						사망위로금 10만원(참전명예수당 대상자) 3·1절/광복절 1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북구	4.19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65세 이상	35,000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 유족	65세 이상	35,000						사망위로금 10만원(참전명예수당 대상자) 3·1절/광복절 10만원
수성구	4.19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65세 이상	35,000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 유족	65세 이상	35,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명예수당 대상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설명절 5만원(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중 수당 미지급 대상자)
달서구	4.19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65세 이상	35,000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 유족	65세 이상	35,000						사망위로금 10만원(월남참전유공자)
달성군*	4.19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 자 70,000 그 외 35,000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순직군 경 유족	65세 이상	35,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특별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연1회)

-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군위군은 2023.7.4.자로 대구시에 편입되어 2023년 말까지는 경상북도 규정에 따라 지원하므로 본 실태조사에서는 경상북도로 구분함
3. *미회신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4.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인천광역시 및 10개 구·군

시도명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천	월 5만원	월 7만원	월 7만원	월 10만원	20만원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유족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유족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중구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50,000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10만원/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동구		65세 이상	60,000		65세 이상	60,000	65세 이상	60,000				사망위로금 10만원(참전유공자) 건강생활지원수당 20만(10만원*2회, 동구에 1년이상 거주한 만 65세이상)
미추홀구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6.25참전 80,000 그 외 50,000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10만원/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건강생활지원수당 10만원 (5만원*2회, 만65세 이상)
연수구		65세 이상, 거주기간 3개월	50,000		65세 이상, 거주기간 3개월	50,000	65세 이상, 거주기간 3개월	50,000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10만원/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건강생활지원수당 10만원(5만원*2회, 연수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명절 5만원(국가유공자대상자)
남동구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50,000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10만원/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명절 5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부평구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50,000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10만원/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건강생활지원수당 10만원(5만원*2회)
계양구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100,000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10만원/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명절 5만원
서구		65세 이상	80,000		65세 이상	80,000	65세 이상	6.25참전 100,000 그 외 80,000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10만원/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명절 5만원
강화군	5.18민주유공자 제외	65세 이상, 거주기간 3년 이상	보국수훈자 60,000 그 외 100,000	5.18민주유공자 제외	65세 이상, 거주기간 3년 이상	보국수훈자 60,000 그 외 100,000	만65세 이상, 거주기간 3년이상	100,000	거주기간 3년이상	150,000	참전유공자 봉사활동참여 자 수당 20만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10만원/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
옹진군		65세 이상, 거주기간 3개월 이상	100,000		65세 이상, 거주기간 3개월 이상	100,000	65세 이상, 거주기간 3개월 이상	12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광주광역시 및 5개 구

시도명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위문급	5·18민주유공자 지원		
				생계지원비	민주명예수당	장제비
광주	월 4만원	일반참전유공자 -80세 이상: 월 10.4만원 -65~79세: 월 8만원 그 외 월 4만원	연 5만원~20만원 (연1회)	월 10만원	월 5만원	발생 시 100만원
	65세이상의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419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65세이상의 광주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	생존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만65세 이상 중 위 소득 100%이하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이 아닌 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 사망시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기준 여부	금액(원)	기준 여부	금액(원)		
동구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일반참전유공자 -80세 이상 26,000 -65~79세 20,000 그 외 월 10,000				사망위로금 10만원(참전유공자)
서구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일반참전유공자 -80세 이상 26,000 -65~79세 20,000 그 외 월 10,000				사망위로금 15만원(명예수당 지원 본인)
남구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일반참전유공자 -80세 이상 26,000 -65~79세 20,000 그 외 월 1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시도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북구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일반참전유공자 -80세 이상 26,000 -65~79세 20,000 그 외 월 10,000				사망위로금 10만원(참전유공자)
광산구		65세 이상, 거주기간 1년	10,000		65세 이상	1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일반참전유공자 -80세 이상 26,000 -65~79세 20,000 그 외 월 10,000				

-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입무유공자임
2. *보훈(유족)수당에서 5.18민주유공자는 제외하며, 5.18민주유공자는 시비로 100% 지원하고 있음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시도명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5만원	월 10만원	월 8만원
대전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민주(4.19, 5.18)유공자(유족), 특수입무유공자(유족), 무공·보국수훈자(본인), 전상·공상군경(본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중 대전시 주민등록 거주자

사건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동구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30,000			3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광복절 온누리상품권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온누리상품권 2만원 명절 100만원(독립유공자 본인)
중구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30,000			3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광복절 온누리상품권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온누리상품권 2만원 명절 100만원(독립유공자 본인)
서구	제일학도의용군인,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30,000	전상군경, 공상군 경, 무공수훈자, 보국 수훈자, 제일학도 의용군인 제외		3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광복절 온누리상품권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온누리상품권 2만원
유성구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30,000			3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광복절 온누리상품권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온누리상품권 2만원 명절 5만원
대덕구*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30,000			30,000		50,000				

-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제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미회신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울산광역시 및 5개 구·군

시도명	참전명예수당	참전유족수당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울산	-80세 이상: 14만원 -80세 미만: 11만원	월 5만원	월 20만원
	6·25 또는 월남전 참전자(65세 이상)	참전 전몰·전상군경 유족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중구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80세 이상 60,000 80세 미만 4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7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5만원 명절 3만원(보훈단체 회원)
남구		65세 이상	150,000		65세 이상	15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80세 이상 60,000 80세 미만 40,000				사망위로금 20만원(국가유공자) 3·1절/광복절 7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3만원(보훈단체 회원)
동구			10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80세 이상 60,000 80세 미만 4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18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5만원 명절 2만원(보훈단체 회원)
북구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80세 이상 60,000 80세 미만 4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울주군			100,000			10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80세 이상 60,000 80세 미만 4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5만원(보훈단체 회원)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시도명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수당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보훈대상 위문
경기	월10만원	연 40만원	월10만원	연 10~20만원(연1~2회)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경기도 거주 및 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수원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5세 이상	8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5세 이상	80,000	65세 이상	8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 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성남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300,000 그 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100,000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20만원(애국지사 100만원) 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10만원(유족) 호국보훈의 달 5만원/명절 5만원 100세 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15만원(국가유공자)/20만원(애국지사) 와병 국가유공자 위문 5만원
고양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5세 이상	5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5세 이상	50,000	연령 차등	80세 이상 70,000 80세 미만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 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용인시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연령 차등	80세 이상 70,000 80세 미만 30,000		3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호국보훈의 달 5만원(독립유공자 제외)
부천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65세 이상 사망 시) 3.1절/광복절 5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호국보훈의 달 5만원(65세 미만 국가유공자) 명절 5만원(65세 미만 국가유공자)
안산시		거주기간 1개월 이상	70,000		거주기간 1개월 이상	70,000	거주기간 1개월 이상	160,000	거주기간 1개월 이상	50,000		사망위로금 15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명절 6만원(보훈단체 회원)
안양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15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3만원(보훈명예수당 대상자)
남양주시*		연령차등	65세 이상 100,000 65세 미만 60,000			65세 이상 100,000 65세 미만 60,000	80세 이상	30,000		3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화성시			130,000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 연 1,000,000 (20만원*5회)	사망위로금 5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3만원 명절 3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평택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150,000		50,000	독립유공자 수당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절 5만원 만8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 40만원(20만원*2회)
의정부시		연령차등	65세 이상 100,000 60세~64세 50,000		연령차등	65세 이상 100,000 60세~64세 50,000	연령차등	65세 이상 100,000 60세~64세 50,000	연령차등	65세 이상 100,000 60세~64세 5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시흥시		연령차등	70세 이상 100,000 70세 미만 70,000				연령차등	90세 이상 150,000 70세 이상 100,000 70세 미만 70,000	연령차등	70세 이상 50,000 70세 미만 35,000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차상위계층 이하) 3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10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장수축하금 100만원(1회)
파주시*		연령차등	65세 이상 100,000 65세 미만 50,000		연령차등	65세 이상 100,000 65세 미만 50,000	80세 이상	연 200,000			독립유공자 수당 500,000 유족 10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20만원
광명시	5.18민주유공자 제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3.1절/광복절 5만원(광복회 회원) 호국보훈의 달/명절 3만원(보훈단체 회원)
김포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75세 이상 100,000 75세 미만 5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75세 이상 100,000 75세 미만 50,000	80세 이상	50,000		50,000	독립명예수당 200,000	사망위로금 10만원 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군포시			130,000			130,000		130,000		13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광주시			130,000			130,000		130,000		100,000	생활보조수당 (차상위계층 이하) 130,000 (보훈, 참전 증복지급 불가)	사망위로금 50만원 명절 5만원(보훈단체 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이천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독립유공자 150,000 그 외 100,000		200,000		100,000	독립유공자 건강증진 수당 연 2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명절 3만원
양주시		65세 이상	100,000		65세 이상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3만원 명절 20만원(100세 이상 국가유공자)
오산시		연령차등	75세 이상 110,000 75세 미만 70,000		연령차등	75세 이상 110,000 75세 미만 70,000				20,000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구리시			200,000				연령차등	80세 이상 연 250,000 80세 미만 연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5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10만원
안성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8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연령차등	80세 이상 40,000 80세 미만 20,000		30,000		사망위로금 15만원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광복절 5만원(독립유공자)
포천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200,000					200,000		100,000	독립유공자 수당 2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의왕시			100,000	국가유공자		100,000		120,000		12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명절 3만원
하남시			130,000							7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여주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100,000		100,000	6.25참전유공 자 의료비 지원 30,000	사망위로금 50만원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동두천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5세 이상, 연령차등, 등급차등, 거주기간 1개월	50,000~ 100,000				연령차등, 등급차등, 거주기간 1개월	50,000~ 100,000	연령차등, 등급차등, 거주기간 1개월	5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과천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의료비 바우처 연 50만원	사망위로금 50만원 명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위문금 30만원
양평군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200,000		100,000	6.25전몰군경 유자녀복지수당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가평군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7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70,000		170,000		170,000		사망위로금 17만원 3.1절/광복절 20만원(광복회원)
연천군	5.18민주유공자 제외		100,000	국가유공자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미회신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시도명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강원	월 6만원	월 6만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전몰군경 유족 및 국가보훈대상자	도내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춘천시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연령기준	15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해당		150,000	연령기준	150,000	연령기준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원주시	보국수훈자,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15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해당		150,000	연령기준	1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강릉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50,000					1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명절 3만원(저소득 국가유공자)
동해시		연령기준	150,000			50,000		150,000~ 2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호국보훈의달/광복절 1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태백시*			200,000					2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속초시		연령기준	200,000				연령기준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삼척시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200,000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200,000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 광복절 각 15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홍천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입무유공자 제외		25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입무유공자 제외		250,000		250,000		100,000		사망위로금 4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참전유공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횡성군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포함	거주기간 6개월	180,000 (보국수훈자 13만원)	국가유공자 일부,고엽제후유 의증자 제외		180,000	거주기간 6개월	300,000	거주기간 6개월	180,000		사망위로금 30만원~40만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각 10만원(단체추천 저소득 보훈가족) 생일축하금 10만원(참전유공자)
영월군			200,000			200,000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3만원(저소득 국가유공자)
평창군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250,000					25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5만원 명절 5만원
정선군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200,000			200,000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명절 5만원
철원군		연령 기준	200,000 (보국수훈자 13만원)	국가유공자 일부,보훈보상대 상자,고엽제후유 의증자,특수입무 유공자 제외		200,000	연령 기준	200,000~ 300,000		21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화천군	518민주유공자 제외		200,000	518민주유공자 제외		200,000		300,000~ 40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명절 5만원
양구군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200,000	국가유공자 해당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인제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연령 기준 (보국수훈자 한정)	250,000			150,000		250,000		1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명절 5만원(보훈단체 추천자)
고성군			200,000			200,000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양양군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150,000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150,000		150,000		100,000		사망위로금 40만원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미회신한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시도명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위문
충청북도	월 5만원	독립유공자 월 30만원 유족 월 5만원	월 5만원	연 60만원 (처방전에 의한 진료비 및 약제비) 도비70%,시군비30%(청주시 20%)	농협상품권 15만원 (3.1절 및 광복절)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생존애국지사 1인)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배우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청주시	국가유공자 일부, 고엽제휴유의증자 제외	연령차등, 대상차등	80,000~ 130,000	국가유공자 일부 및 독립유공자 대상	연령차등, 대상차등	80,000~ 100,000		130,000	65세 이상	8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충주시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제외	연령차등, 대상차등	50,000~ 13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연령차등, 대상차등	80,000~ 130,000		130,000		100,000	상이군경, 고엽제전우 목욕비 14,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5만원(기초수급자 의료급여종)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3.1절/광복절 15만원(광복회원) 명절 2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제천시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연령차등, 대상차등	70,000~ 130,000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연령차등, 대상차등	70,000~ 130,000		130,000		8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명절 15만원(독립유공자)
보은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연령차등, 대상차등	80,000~ 15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대상차등	130,000~ 150,000		150,000		9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옥천군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일부 연령기준, 연령차등, 대상차등	100,000	국가유공자 일부,518민주유공 자,고엽제휴유의 증자,특수임무유 공자 제외	일부 연령기준, 대상차등	100,000~ 160,000		16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영동군	국가유공자 일부,보훈보상대 상자,518민주유공 자,고엽제휴유의 증자,특수임무유 공자 제외	65세 이상	180,000	국가유공자 일부,보훈보상대 상자,518민주유공 자,고엽제휴유의 증자,특수임무유 공자 제외		130,000		180,000		13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3.1절/쌍복절 15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증평군	518민주유공자 제외	65세 이상 대상차등	50,000~ 150,000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대상차등	100,000 ~150,000		15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명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그 외 5만원
진천군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연령차등, 대상차등	독립유공자 250,000 그외 50,000~ 15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대상차등	100,000~ 150,000	대상차등	6.25참전 200,000 월납참전 15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3.1절/쌍복절 15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5만원(저소득 국가유공자)
괴산군*								150,000		130,000		
음성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대상차등	50,000~ 15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대상차등	80,000~ 150,000	대상차등	6.25참전 180,000 월납참전 160,000		8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명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단양군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일부 연령기준, 대상차등	100,000~ 16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대상차등	100,000~ 160,000		160,000		120,000	상이군경, 고엽제전우 목욕비 28,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쌍복절 15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 2. *미회신한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시도명	참전명예수당	참전(배우자)복지수당
충청남도	월 3만원	월2만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수당	위문수당
	대상여부	기준여부	금액(원)	대상여부	기준여부	금액(원)	기준여부	금액(원)	기준여부	금액(원)		
천안시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100,000		200,000		100,000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5만원
공주시	국가유공자 일부,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150,000	국가유공자 일부,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150,000		300,000		150,000	생활보조수당 300,000 (생계급여수급자)	장제보조비 50만원(참전유공자)
보령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100,000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아산시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100,000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100,000		300,000		100,000		사망위로금10만원(참전유공자) 31절 10만원~10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호국보훈의 달 5만원~20만원 (애국지사 및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명절 3만원~5만원 (독립유공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참전유공자)
서산시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휴유의증자 제외		160,000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휴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160,000		4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3.1절 10만원(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명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절 10만원(저소득 보훈대상자) 순국선열의 달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419혁명 10만원(4.19유공자)
논산시	국가유공자 일부,보훈보상대 상자,518민주유공 자,고엽제휴유의 증자 제외		독립유공자 200,00 그외 10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독립유공자 200,00 그외 100,000	65세 이상	200,000	65세 이상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50만원(애국지사)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계룡시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일부 연령기준, 대상차등	20,000~ 100,000		대상차등		50,000 ~100,000	300,000		50,000		호국보훈의 달 10만원(참전유공자), 1만원(국가유공자)
당진시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대상차등	50,000 ~20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대상차등	50,000 ~200,000		25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참전유공자)
금산군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20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200,000		250,000		100,000		사망위로금 100만원(독립유공자), 50만원(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10만원(독립유공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부여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100,000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참전유공자) 명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서천군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00,000		20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참전유공자)
청양군	518민주유공자 제외		150,000	5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150,000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10만원(60세 이상 참전유공자)
홍성군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10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200,000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예산군	518민주유공자 제외		150,000	518민주유공자 제외		150,000		250,000		1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참전유공자) 31절생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호국보훈의 달 20만원(저소득 보훈대상자)
태안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100,000		300,000		100,000		사망위로금 15만원(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참전유공자) 명절 5만원 장수축하금 100만원

-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제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미회신한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시도명	보훈명예수당	침전수당
전라북도	월 2만원	월 2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전주시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60,000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60,000		60,000		6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군산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100,000			100,000	65세 이상	100,000		8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익산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대상차등	40,000 ~60,000		대상차등	40,000 ~60,000	65세 이상	60,000		50,000		사망위로금 15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5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호국보훈의 달 2만원 명절 5만원
정읍시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거주기간 3개월 이상	80,000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80,000		80,000		80,000	생활보조수당 100,000 (중위소득 50% 이하)	사망위로금 50만원(수당지급 당사자) 3.1절/호국보훈의 달/광복절/명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남원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8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80,000	65세 이상	80,000		80,000		사망위로금 15만원~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생일축하금 5만원~1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김제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9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90,000		90,000		9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50만원(독립유공자)
완주군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60,000		60,000		6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진안군			110,000			110,000		110,000		11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무주군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90,000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90,000		90,000		9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장수군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90,000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90,000		90,000		9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임실군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90,000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90,000		9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10만원
순창군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8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80,000		80,000		8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고창군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90,000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90,000		90,000		90,000		사망위로금 100만원
부안군			90,000			90,000		90,000		9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광복절/명절 3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입부유공자임
2. *미회신한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시도명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전라남도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도내 주소로 두고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도내 주소로 두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독립유공자(본인) 없음	도내 주소로 두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6·25 및 월남전 참전자	도내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기준 여부	금액(원)	기준 여부	금액(원)		
목포시		65세 이상	80,000			80,000	65세 이상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10만원(저소득, 1급중이상자 등) 명절 5만원(65세 이상)
여수시	국가유공자 일부 제외	연령 기준	100,000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연령 기준	100,000		85세 이상 150,000 85세 미만 100,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광복절 15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순천시	국가유공자 일부,보훈보상대 상자 제외	거주기간 1개월 이상	100,000	국가유공자 일부,보훈보상대 상자 제외	거주기간 1개월 이상	100,000	거주기간 1개월 이상	100,000	거주기간 1개월 이상	'07 이전 사망 100,000 '08년 이후 사망 50,000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200,000 (6개월 이상 거주)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나주시*			50,000			5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광양시			150,000		150,000			150,000		100,000	의료비 수당 3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5만원
담양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연령차등	10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연령차등, 등급차등	100,000	65세 이상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5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10만원
곡성군			100,000			10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10만원 명절 5만원
구례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5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50,000		8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3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3만원
고흥군*			80,000			80,000	65세 이상	100,000		80,000		사망위로금 20만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보성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5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 제외		5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광복절 2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1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화순군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휴유증자 제외		70,000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휴유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7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명절 10만원
장흥군		일부 연령 기준	50,000			50,000	65세 이상	90,000	65세 이상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강진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5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50,000		70,000		50,000	전입장려금 500,000~ 1,000,000 (1회, 6개월 이상 거주)	사망위로금 20만원
해남군			80,000		65세 이상	50,000		80,000	65세 이상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10만원 광복절/명절 10만원(저소득 국가유공자)
영암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거주기간 1개월 이상	10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거주기간 1개월 이상	100,000	거주기간 1개월 이상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명절 10만원
무안군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증자 제외		70,000			70,000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함평군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휴유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휴유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100,000	65세 이상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영광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증자 제외		7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70,000	65세 이상	8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광복절 5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장성군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100,000	국가유공자 일부 대상		100,000		140,000		10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10만원 4.19 수당 10만원(419혁명유공자)
완도군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50,000	국가유공자 일부 대상		50,000		7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3.1절/광복절/호국보훈의 달 10만원 (국가유공자) 명절 10만원
진도군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70,000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70,000		120,000		70,000		사망위로금 50만원 3.1절/광복절 5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10만원 국보훈의 달 5만원 망절 10만원
신안군		거주기간 1년	50,000			50,000		70,000		70,000		사망위로금 20만원(참전유공자)

-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미회신한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

시도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유가족 명예수당
경상북도	6.25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월남참전유공자 월 5만원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선순위 1인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주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포항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80,000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8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경주시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65세 이상	8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8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포함)
김천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8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8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40만원
안동시*			100,000			100,000		100,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구미시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10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휴유의증자 제외		100,000		150,000		50,000	상수도요금 5,100	사망위로금 3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영주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외		100,000				대상차등	6.25참전 250,000 월납참전 15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포함)
영천시	518민주유공자 제외		100,000	518민주유공자 제외		10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포함) 명절 2만원
상주시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7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7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문경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5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50,000		150,000		1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경산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00,000		15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포함) 명절 2만원
군위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65세 이상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65세 이상	100,000	대상차등	6.25참전 150,000 월납참전 100,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의성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7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7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5만원
청송군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130,000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특 수임무유공자 제외		130,000		150,000		1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영양군			100,000			10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영덕군			100,000			10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청도군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8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8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고령군			70,000			7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성주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0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칠곡군			100,000			100,000	대상차등	6.25참전 200,000 월납참전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예천군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입무유공자 제외		100,000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입무유공자 제외		10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10만원(저소득 국가유공자)
봉화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8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80,000		15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울진군			100,000			100,000		100,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포함)
울릉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10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입무유공자임
2. *미회신한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시도명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위문금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6.25	월남전	
경상남도	월 5만원	월 5만원	월 12만원	-80세 미만: 월 7만원 -80세 이상: 월 12만원	-3.15유족 및 공로자: 7만원 -천안함 전사자유족 및 전상자: 10만원 -입원중 국가유공자: 5만원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3.15의거 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입원중인 보훈대상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기준 여부	금액(원)	기준 여부	금액(원)		
창원시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50,000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전몰군경 100,000 그 외 5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3.1절/광복절/호국보훈의 달 3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5만원 명절 5만원(국가유공자), 1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진주시			100,000		대상차등	전몰군경 150,000 그 외 100,000		15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통영시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5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대상차등	독립유공자·전몰군경 100,000 그 외 50,000	연령차등	80세 이상 150,000 80세 미만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2만원 도서거주유공자 사망시 선박지원금 50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사천시	보훈보상대상자,5 18민주유공자,고 엽제후유의증자 제외		50,000		대상차등	독립유공자 100,000 전몰군경 80,000 그 외 50,000		130,000		50,000		사망위로금 20만원 호국보훈의 달/명절 3만원
김해시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대상차등	특수임무유공 자 100,000 그 외 5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대상차등	전몰군경 100,000 그 외 5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명절 5만원
밀양시			50,000		대상차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80,000 전상군경 70,000 그 외 50,000	연령차등	80세 이상 130,000 80세 미만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광복절 3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3만원
거제시		대상차등	70,000~ 100,000			100,000		150,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호국보훈의 달 10만원 명절 3만원
양산시			50,000		대상차등	전몰군경 70,000 그 외 50,000	연령·대상차 등	6.25참전 120,000 월남참전 80세 이상 120,000 80세 미만 10,000		50,000		사망위로금 50만원(참전유공자), 20만원(그 외) 명절 5만원
의령군			80,000			80,000		130,000		80,000		사망위로금 30만원 3.1절 3만원(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 3만원 명절 2만원
함안군			100,000			100,000		150,000		10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창녕군					대상차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100,000 그 외 50,000		15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고성군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대상차등	보국수훈자 50,000 그 외 10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100,000		150,000		100,000		사망위로금 50만원(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호국보훈의 달/명절 5만원
남해군	국가유공자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제외		50,000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대상	대상차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100,000 그 외 5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하동군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50,000		대상차등	전몰군경 100,000 그 외 50,000		100,000		5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명절 2만원(보훈가족 일부)
산청군	국가유공자 일부,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대상차등	보국수훈자 50,000 그 외 70,000		대상차등	전몰군경 180,000 그 외 50,000~ 70,000		180,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명절 5만원
함양군		대상차등	50,000~ 70,000		대상차등	50,000~ 70,000	연령·대상차 등	6.25참전 150,000 월남참전 80세 이상 150,000 80세 미만 13,000		70,000		사망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명절 5만원
거창군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70,000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대상차등	전몰군경 150,000 독립유공자 100,000 그 외 70,000		150,000		70,000		사망위로금 50만원(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5만원 명절 3만원

시군구명	보훈수당			보훈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방안 수당		기타 수당	위문수당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원)	대상 여부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기준 여부	금액 (원)		
합천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5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상	대상차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100,000 그 외 50,000		150,000		50,000		사망위로금 50만원(참전유공자:공상군경) 호국보훈의 달 5만원 명절 3만원 85세 이상 생일축하금 5만원

- 주: 1. 본인 및 유족대상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기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임
2. *미회신한 지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작성함
3.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다.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6장 제1절)

1) 사회보장제도로서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원칙 및 고려사항

□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원칙 및 추진방향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 추진 또는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조정 원칙 및 추진 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적용해야 하는 3가지 기본원칙은 '타당성', '보충성', '적정성'이며, 구체적으로 조정방안 도출 및 실행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단계적 이행 전략' 등 2가지 원칙이 중요하며, 이는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원칙 및 추진방향 설정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함
- (1)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타당성
 - ☞ 국가보훈제도가 지닌 사회적 보상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 타당성 고려
- (2) 중앙정부 정책지원(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보충성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보충성 원리에 따른 역할 분담 및 상호 보완
 - 보충성 원리는 중앙정부 지원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지라도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지원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존재여부, 지원 수준의 충분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충성 원리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수준 적정성까지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된 경우는 조정 필요성이 낮음
 - 이러한 보충성 원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유사 제도에 대한 합리적 조정안 마련이 필요함

○ (3) 지자체 보훈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수준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측면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및 격차 해소

- 급여수준의 적정성 원리는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대상 및 정책영역별로 각종 법정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정책지원 수요 및 지출 비용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의 범위 또는 상한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임
- 특히, 급여수준의 적정성 원리는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대상 및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제도 조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광역 지자체 간 또는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및 조정을 위한 원칙으로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칙임
-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수당 성격의 사업 운영기준(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수준 등)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경우 적정성의 원리에 따른 조정방안 제시가 필요함
- 다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이나 재정 여건 등 정책 상황에 따라 자치 분권의 원리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생애주기 및 정책영역별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적정성 원리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격차 해소, 전달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조정방안 제시가 필요함
- 그러나 국가보훈제도의 특성 상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현금성 보훈수당의 경우는 해외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나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중앙정부 보훈정책 확대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보충성 및 적정성 원리에 따라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마련 및 단계적 이행이 더욱 중요함

○ (4)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에 있어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 분담 관련 조정방안 합의 및 이를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

☞ 중앙정부 보훈수당 확대 추진과는 별도로 우선 시급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이행을 위해 광역 단위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통합 조정방안 마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며, 최근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의 거버넌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및 조정 과제과 연계하여 거버넌스(사회보장위원회와 다양한 정책영역별 중앙부처)를 활용하여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을 시급한 이슈로 선정하고, 국가보훈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국가보훈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조정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5)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에 있어 지역 간 격차 및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 분담 관련 조정방안 수용 및 실천을 위한 단계적 이행 전략

☞ 지자체 보훈수당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어 사회보장 제도의 특성 상 축소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도출된 조정방안의 실행 및 완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일정 등을 고려한 단계적 이행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기초 지자체 현금성 보훈수당 조정 시 광역 지자체 보훈수당 추진 계획과의 연계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환 등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이행 전략 마련

□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 생애주기 및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 유형과 관련하여 보훈정책 영역에서 지자체 보훈수당 등 조정방안 마련 시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재정 분권 및 복지 분권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분담 역할 조정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앙정부 현금 지원 유형의 소득보장제도의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사회보장 분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자체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가능함
 - 보훈수당의 경우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 차원으로, 현금 지원 성격의 보훈수당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등 역할을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 보훈수당을 통합 조정하여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 및 차별화가 필요함
- (2)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절차 및 기준과 이에 따른 최근 협의 동향을 반영하여, 현금 지원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 분담 방향 및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현금성 지원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보훈수당 영역의 조정방안 도출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개념 정의에 따라 제시된 정책영역 및 다양한 정책유형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를 의미함
 - 이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 소득수준 등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급여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공공부조 유형 및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수당 유형 사회보장제도 등 소득보장 성격의 제도가 현금성 지원에 해당함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책대상 또는 정책지원 목적에 따라 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 수혜 대상이 어떤 목적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과거 현물 지원의 대체적인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우처나 지역화폐 등 전자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현금 지원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 분류하기 위해 특정 정책영역에 대한 정책지원 목적과 지출을 전제로 한 지원 여부, 사용처가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가능한 범

위가 제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보훈수당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을 지니므로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방향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현금성 지원 유형의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대표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조정방안 마련 시 이를 고려하여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 사회보장 전략회의(23.5.31) 추진과제 및 결과에 따른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사회보장 분야의 유사 사업 통합 관리 조정방향과 사회보장위원회 및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거버넌스 고려

- 사회보장 전략회의(23.5.31)에서 소득보장 관련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범위를 현실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여 보장수준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중산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 구조로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함
-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이 높지 않은 광역-기초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전시성·선심성·일회성 사업,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지원 이면서 보충성 및 급여수준 적정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유사 사회보장제도의 조정방안 마련 및 추진 계획을 제시함
- 광역 지자체 간 보훈수당의 격차도 존재하지만, 더욱 심각한 차이는 시군구마다 자체적으로 보훈수당을 도입 및 확대함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역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 추진 방향과 연계할 수 있음

2)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가이드라인

-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가이드라인 및 단계적 이행방안 도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국가보훈부) 및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보훈정책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보훈정책 영역에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 분권이 매우 강력하지만 보훈수당만큼은 논리적 근거에 따라 중앙정부 역할이 크고 지방정부는 현금성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주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연방정부(VA)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함
 - ☞ 이는 광역 단위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고, 특히 보훈정책 영역에서 중앙정부(국가보훈부)와 광역 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확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기반으로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함
- 연방 형태인 미국의 각 주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다양한 정책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설정하고 독립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을 만큼 사회보장 영역에서 복지 분권이 강력한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현금성 보훈수당의 경우 연방정부 중심으로 지급하고 주정부는 현금성 보훈수당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일자리, 교육, 이동편의, 정신건강 지원 등)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주정부별로 상이한 주정부 세금감면 혜택은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며, 기초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카운티 또는 시티의 경우 별도 보훈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
 - 연방정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현금성 수당 및 서비스 등 종합적 보훈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를 통해 시행
 - 주정부(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는 현금성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 중심으로 이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정부마다 차별적으로 자체적인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자체가 현금성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논리적 배경
 -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던 동일한 수준의 현금성 보훈수당을 지급(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 및 추가 지원은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는 국가(연방)를 위해 희생과 공헌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현금 지원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임
 - 다만, 주정부마다 다양하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지급한 동일한 수준의 현금성 보훈수당이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주정부 조세 체계와 세율로 인해 구매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일 뿐이며 현금성 수당 지급은 거의 고려하지 않음
 - 각 주정부에서는 오히려 현금성 보훈수당 지원 대신 지역사회에서 참전군인 등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주정부 보훈 업무 담당자나 참전군인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역시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금성 보훈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지도 않음
 -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의 논리적 근거 역시 보훈대상자는 국가(연방)를 위해 희생·공헌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참전군인 등 보훈대상들은 자신이 주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군대에서 복무한 것임을 강조함
- 요컨대, 보훈정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살펴보면, 주정부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이 강하고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주정부마다 독립적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 및 시행 중임

- 그러나 현금성 보훈수당의 경우는 중앙정부(VA)를 중심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모든 참전군인 등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하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가적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외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보훈수당 및 서비스 관련 역할과 기능 분담 구조를 고려하면,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마련 시 적용 원칙 중 하나인 제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현금성 보훈수당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국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상별 현금성 보훈수당을 포함한 보훈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전국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국가보훈부)가 전국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보훈수당과는 별도로 광역(강원도가 2006년 처음으로 조례 제정) 및 기초(강원도 양구군에서 2007년 처음으로 조례 제정)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현금성 보훈수당을 20여년 가까이 이미 지급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를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므로, 제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보훈수당을 통합 조정하고 지자체의 경우 보훈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국가보훈부가 보훈수당의 확대 및 중앙정부 예산 규모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자체 지급하고 있는 현금성 보훈수당을 단계적으로 흡수하고 기초 지자체는 기존의 보훈수당 관련 예산을 다양한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함

- 결론적으로,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추진 가능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현금성 보훈수당 조정방안은 중앙정부(국가보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월 15만원 수준)을 참고하되,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시군구별로 현금성 보훈수당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보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 현금성 보훈수당 확대는 지양하고 광역 지자체 단위 통합 조정방안을 마련하되, 기초 지자체 지원수준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 특히, 사회보장제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 원리에 따라 앞서 제시한 사회보장제도 조정원칙과 방향을 반영하여 광역 단위에서 기초 지자체 간 현금성 보훈수당 통합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현금성 보훈수당 조정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4대 영역 13개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첫 번째 영역의 4개 원칙은 특히 광역 단위 조정안 합의 및 단계적 이행 시 기본 원칙에 해당함
 - (1)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간 현금성 보훈수당 격차 조정
 - ★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우선 조정 후 광역 지자체 간 조정 원칙
 - ★ 광역 단위 광역-기초 지자체 지원 금액 합산 총액 기준 통합 조정 원칙
 - ★ 조정안 목표 수준보다 상위 지자체 보훈수당 동결 및 유지 원칙
 - ★ 보훈수당 감액 등 보훈대상자 불이익 변경 조정 불가 원칙
 - (2) 보훈수당 유형 및 지원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한 격차 조정
 - (3) 합의 기반 조정안 도출 및 단계적 이행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 간 거버넌스
 - (4) 중앙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보훈정책 역할 분담 방향 및 기초 지자체 역할

<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현금성 보훈수당 통합 조정 가이드라인 >

1.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간 현금성 보훈수당 격차 조정

① 기초 지자체 간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조정방안 도출 및 단계적 이행 전략의 지역적 범위는 광역 단위이며,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간 조정과 더불어 전국 광역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및 조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
(★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우선 조정 후 광역 지자체 간 조정 원칙)

② 광역 단위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합산한 총액 (광역 & 기초 개별 지급 / 광역 보조 & 기초 추가 지급)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광역 지자체 내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합 조정한다.

(★ 광역 단위 광역-기초 지자체 지원금액 합산 총액 기준 통합 조정 원칙)

③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통합 조정안 마련 시, 보훈수당 지급 금액이 최상위 또는 목표로 설정한 조정안보다 상위 수준인 기초 지자체는 광역 단위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 지원 금액을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통합 조정이 완료될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동결 및 유지한다.

(★ 상위 지자체 보훈수당 동결 및 유지 원칙)

(☞ 서울특별시 조정 합의한 사례 참조)

④ 기초 지자체마다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지급하고 있는 현행 현금성 보훈수당 지원 수준은 보훈대상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감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한다.

(★ 보훈수당 감액 등 보훈대상자 불이익 변경 조정 불가 원칙)

▼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감액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

광역 지자체가 현금성 보훈수당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광역 단위로 합의된 통합 조정안 이행을 위하여 최상위 수준인 기초 지자체가 지원 수준을 일부 감액하더라도, 기존 광역과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의 합산 총액보다 낮지 않을 경우 조정안보다 높은 상위 수준의 기초 지자체는 일부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의 현금성 보훈수당을 감액하는 기초 지자체는 감액으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기존의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 전환하여 투입함으로써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보훈수당 유형 및 지원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한 격차 조정

- ① 현금성 보훈수당은 크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수당 간 지원 수준의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당마다 광역 단위에서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합 조정한다.
- ②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차등 지급은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 특성별에 따른 지급 수준은 광역 단위에서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합 조정한다.
- ③ 광역 단위에서 기초 지자체마다 보훈대상자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연령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조정한 후, 연령별 차등 지급을 적용하지 나머지 기초 지자체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광역 단위에서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합 조정한다.
다만, 연령별 차등 조정 시 이를 하향 조정할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상황이므로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높은 연령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지급을 검토한다.

(☞ 경상남도 조정안 사례 참조)

3. 합의 기반 조정안 도출 및 단계적 이행 관련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거버넌스

① 광역 단위로 운영 중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합의를 기반으로 현금성 보훈수당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조정안을 마련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상호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광역 단위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 지원 수준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보훈수당 통합 조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기초 지자체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현금성 보훈수당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으며, 광역 지자체가 지원 수준을 인상한다.

▲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증액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

광역 단위 통합 조정 이후, 광역 지자체 간 격차 해소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 인상 부분에 대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분담할 경우 인상할 수도 있으나, 광역의 지원 수준과 분담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한해서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일 시점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훈수당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③ 기초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조정안 마련 시, 광역 지자체는 향후 조정이 필요한 전국 광역 지자체 간 격차를 고려하여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치 보다 현행 지원 수준이 낮은 기초 지자체의 자체 재원에 의한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현금성 보훈수당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4. 중앙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보훈정책 역할 분담 방향 및 기초 지자체 역할

① 현금성 보훈수당은 중앙정부 역할과 재원을 중심으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공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방 분권이 강조되는 여타 사회보장 분야와 달리 보훈정책 영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현금성 보훈수당은 중앙정부(국가보훈부)가 지원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②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 지방정부는 현금성 보훈수당 확대를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현금성 보훈수당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경우도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추가 지원하며, 기초 지자체는 다양한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③ 현금성 보훈수당에 있어 기초 지자체가 아니라 광역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을 보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달리,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이미 현금성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과 보훈수당 조정안 이행으로 인한 보훈대상자의 불이익 변경 불가 원칙을 고려하여 지자체 보훈수당은 조정 과정에서 계속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통합 조정 과정 및 광역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훈수당 인상 추진 시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여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와 일정 비율 분담하거나 또는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을 대체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현금성 보훈수당 지원은 ‘중앙정부 > 광역 > 기초’ 순서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중앙정부의 역할 및 비중이 높아지도록 확대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광역 지자체는 시도 간 격차 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만 제한적으로 확대한다.

★ 기초 지자체는 광역 단위에서 합의된 시군구 간 격차 해소 조정방안 또는 시도 간 격차 해소 조정방안에 따른 단계적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현금성 보훈수당 확대는 더 이상 지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전환 및 확대한다.

라.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 (제6장 제2절)

- 앞서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훈수당 조정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광역 단위로 도출한 시도별 보훈수당 통합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안하며, 이러한 조정안은 광역 단위에서 운영 중인 거버넌스를 통해 협의 및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 지자체(경기도의 경우 남부·북부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조정방안도 제시)를 대상으로 현금성 보훈수당 통합 조정 및 단계적 이행방안 제시
- 이번 연구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기초 지자체 간 현금성 보훈수당의 통합 조정안 중심으로 제안하지만, 광역 단위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에 이러한 조정안을 수정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중장기적으로 광역 지자체 간 현금성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앞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광역 지자체 간 현금성 보훈수당 조정뿐만 아니라 국가 보훈정책 영역에서 중앙정부(국가보훈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 분담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하며, 현금성 보훈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와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기초 지자체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생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함

1) 서울특별시

☞ 자체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조정을 추진 중이나 일부 기초 지자체가 조정안 합의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정안 마련 및 인상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

□ 서울특별시 자체 조정안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복지대타협 TF를 구성하여 자치구 간 3개 현금성 복지 급여(입학준비금, 출산장려금, 보훈예우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평준화 방안 마련
- 거주 지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 존재 및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훈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 자치구별 보훈수당 인상 경쟁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및 재정 여건 악화 가능
-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25개 자치구 전체 동의하에 평준화 방안 준수할 것을 합의('21.9) 및 재확인('22.10)
 - 그러나 2023년 평준화 방안보다 초과 인상한 2개 자치구가 발생함에 따라서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방안 준수 재요청('23.7)

□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자체 조정안

- 2023년까지 5만원 미만 자치구 5만원으로 상향 (5만원 이상 자치구 동결)
 - 2023년 보훈예우수당 인상 14개 자치구
 - 합의 준수 12개 자치구 (5만원 미만에서 5만원으로 상향)
 - 합의 미준수 2개 자치구 (영등포구 4만원⇨6만원 / 송파구 5만원⇨10만원)
- 2023년 1월 기준 20개 자치구 5만원 / 5개 자치구 6~10만원
- 2025년까지 7만원 미만 자치구 7만원으로 상향 합의(7만원 이상 자치구 동결)
- 2025년까지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방안 준수 재요청('23.7)
 - 21개 자치구 7만원으로 상향
 - ☞ 5만원에서 7만원 20개 자치구, 6만원에서 7만원 1개 자치구(영등포구)

- 7만원 이상 4개 자치구 동결 요청

☞ 7만원 2개 자치구(중구, 서초구), 8만원 1개 자치구(강남구), 10만원 1개 자치구(송파구)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추가 조정방안 제안

○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방안에 따른 2025년 7만원으로 2차 상향 조정 이후 2026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8년 1월까지 전체 25개 자치구 지원 수준을 10만원으로 통합하는 조정방안을 추진하여 사전에 합의 완료

☞ 2027년 하반기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2028년 1월부터 25개 자치구 전체 10만원으로 조정 완료

- 23개 자치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 8만원 1개 자치구(강남구) 10만원으로 상향

- 10만원 1개 자치구(송파구) 동결

○ 특히, 서울특별시가 2019년에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5년 만에 2024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약 4만 2천명 대상)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 10만원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800명에서 약 36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25개 자치구는 보훈예우수당(10만원) 통합 조정과 함께 지급대상 범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 필요

○ 최종적으로, 기존의 자체 조정안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면,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지원 수준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25만원(광역 15만원 + 기초 10만원), 보훈예우수당은 월 20만원(10+10)으로 조정 완성

2) 부산광역시

☞ 재정 여건으로 인해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기장군에 대한 예외 적용 조정 필요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 부산광역시의 경우 광역이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과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급하고 있음
- 부산의 16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월 5만원 이하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예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임
 - 재정 여건이 특히 어려운 북구의 경우는 보훈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구는 월 1만원을 지원하는 등 대부분 월 3~5만원 수준을 지원함
 - 영도구의 경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등 수급 자격 등 부가적인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 반면에, 강서구는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장군이 유일하게 참전명예수당 20만원과 보훈예우수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부산광역시 조정안 제안

- 부산광역시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나 충청남도과 같이 기초 지자체가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조정안의 경우 광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0~5만원 수준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조정안이 가능함
- (1안) 부산광역시가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 총액 기준 월 15만원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경우,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총액 기준으로 현재의 지원 수준을 유지 또는 인상하게 되므로 수용 가능할 수 있고, 기초 지자체는 제한적으로 투입되었던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현금성 보훈수당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강서구와 기장군의 경우,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월 18만원, 월 30만원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고 최상위 수준의 지자체에 해당하므로, 가이드라인 상 예외적 상황을 적용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성 보훈수당을 감액하면서 이러한 재원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다수의 기초 자치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 역시 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광역 차원에서 현행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이를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통합 조정안으로 설정하고 일부 기초 지자체 차원의 보훈예우수당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을 검토함
- (2안) 부산광역시 재정 여건 상, 1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초 지자체가 월 5만원을 목표수준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구와 동구 등 일부 기초 지자체 수용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기초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일부 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을 차등 지원하는 형식으로 부산광역시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3안) 중장기적으로 광역 지자체 간 격차 조정을 고려한다면, 두 가지 조정안을 적용할 경우 부산광역시는 광역 지자체 중 하위 수준에 해당하여 추가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종 조정안의 목표치 수준을 월 20만원으로 설정하고, 강서구와 기장군을 포함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3) 대구광역시

☞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통합 조정안 이행 가능한 사례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 대구광역시의 경우, 앞서 부산과 유사하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과 보훈예우수당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8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월 3.5만원을 부담해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별도 추가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가 없음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대구광역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 중 참전 미망인 수당을 별도 원하는 달성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역할 및 재정 분담을 통해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광역), 보훈예우수당 7만원(광역 3.5만원 + :기초 3.5만원) 수준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과 비교할 때 부산과 함께 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활용한 합의를 통해 국가보훈부에서 권고한 월 15만원 수준까지 인상이 가능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인상분에 대해서 현행 구조에 따라 1:1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매칭하거나 광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하여 광역 10만원 & 기초 5만원 수준으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달성군이 월 7만원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의 경우, 대구광역시 전체로 확대 가능한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 매칭 또는 기초 지자체가 이를 별도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함

4)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월 5~10만원 수준인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조정 가능한 지자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 인천광역시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과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임
- 인천광역시 10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월 5~10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월 5~12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음
 - 5개 자치구는 각각 월 5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동구가 월 6만원, 서구와 계양구가 8~10만원 수준으로 상위 지자체이며, 강화군과 옹진군이 각각 10~1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화군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월 1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1안)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지원 수준을 고려할 때,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을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20만원(10+10), 보훈예우수당은 15만원(5+10)을 조정안 목표로 우선 설정하고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위 기초 지자체의 연차별 단계적 인상안을 도출하여 합의 및 이행할 수 있음
 - 최상위 기초 지자체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예외적으로 옹진군의 경우 월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2안) 최상위 기초 지자체 지원 수준을 고려하고,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광역 지자체가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최상위 지자체인 옹진군에서도 지원받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감액하지 않으면서도 차액분을 서비스로 전환하고,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15+10), 보훈예우수당 월 20만원(10+10) 수준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음

5. 광주광역시

☞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일한 구조와 지원 수준으로 지역 간 격차가 없으나, 광역 단위에서 연령별 차등 지원을 조정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총액 기준 지원 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지역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

- 광주광역시의 경우, 보훈예우수당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여 각각 4만원, 8만원,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연령대에 지원하는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임
- 광주광역시 5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월 5~10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월 5~12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음
 - 5개 자치구는 각각 월 5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동구가 월 6만원, 서구와 계양구가 8~10만원 수준으로 상위 지자체이며, 강화군과 옹진군이 각각 10~1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화군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월 1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일한 구조와 지원 수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연령별 차등 지원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10+5)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월 5만원(4+1)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타 시도 지원 수준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월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6) 대전광역시

☞ 모든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동시에 제정(2021.7월 / 광역 2020.1월)하고, 광역 단위에서 통합 조정이 완성된 지자체

- 대전광역시는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과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으로 타 광역시 지원 수준과 유사하며, 모든 기초 지자체가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8만원으로 지역 간 격차 문제없이 광역 단위에서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여 조정이 완성된 지역이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공동으로 광역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수준 상향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이행이 필요함

7) 울산광역시

☞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조정되었으나 연령별 차등 관련 조정이 필요하며, 보훈명예수당 조정 가능한 지자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광역 지자체의 경우 참전명예수당만 80세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서 14만원과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일하게 6만

원과 4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월 20만원(14+6)과 월 15만원(11+4)을 지원하여 대도시 지역 광역 지자체와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임

-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남구만 월 15만원으로 나머지 기초 지자체(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의 경우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역 간 격차 없이 통합 조정이 완성되어 있으나 연령별 차등 지원을 폐지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향 조정할 경우, 월 20만원으로 지원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광역과 기초 지자체 분담 비율은 7:3으로 적절함(광역 지자체 월 14만원 & 기초 지자체 월 6만원)
- (1안) 울산광역시 5개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남구만이 월 15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월 10만원이므로, 서울특별시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남구는 현행 15만원 수준을 유지 동결하고, 나머지 4개 기초 지자체가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여 통합 조정할 수 있음 (1단계 12만원 / 2단계 15만원)
 - 이 경우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으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광역 단위 격차를 고려할 때 예외적 상황을 적용하여 울산 남구 지원 수준을 조정하는 2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음
- (2안) 현재 15만원인 울산 남구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후 전체 예산은 축소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예산은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울산광역시 기초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으로 통합 조정 가능함

8) 경기도

☞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경기도의 추가 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역 범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여 통합 조정 필요한 지자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광역 지자체의 경우 참전명예수당만을 연간 4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여 월평균 약 3.3만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보훈명예수당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기초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훈대상자 규모도 가장 많으므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성 보훈수당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기초 지자체의 지원 수준을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광역 간 격차 해소 과정에서 조정이 어려운 지역임

○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부터 월 25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연령별 차등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

○ 보훈명예수당의 경우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31개 기초 지자체가 월 5~20만원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기초 지자체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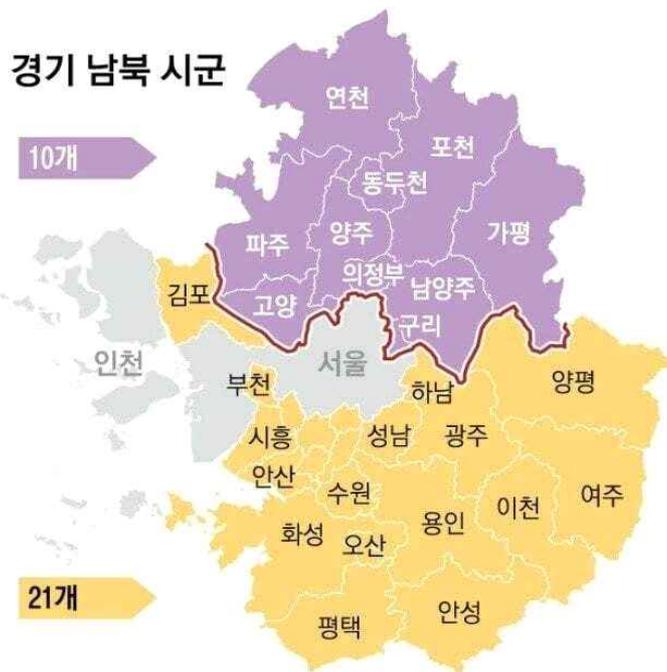
- 이러한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나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여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경기도의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지원 수준을 확대하더라도 이와 병행하여 기초 지자체의 편차를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와 유사하게 최상위 지자체들은 현행 지원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 및 동결하고, 불가피하게 최

상위 지자체의 경우 서비스 전환을 통해 하향 조정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질 필요성이 높음

-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접경 지역을 포함하고 상대적으로 지원 수준이 높은 경기 북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기도 분도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 북부 시군(10개)과 경기 남부 시군(21개)로 구분하여 통합 조정방안 및 단계적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지역 간 격차가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조정안을 제시함
- 일부 지자체에서 연령별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이를 가급적 폐지하고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 조정방안을 제시하되 일부 최상위 지자체의 경우는 연령대별 지원 수준 중에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 북부
 - (참전명예수당)

연령별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한 상향 조정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원 수준이 각각 월 25만원과 20만원으로 최상위에 해당

하는 구리시와 포천시를 포함하는 반면, 고양시와 양주시의 경우 하위 수준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경기 북부 지역의 참전명예수당의 편차가 가장 심각하므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 총액 기준으로 타 시도 지원 수준을 고려할 때, 월 15만원 수준으로 조정안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의 추가 지원과 함께 하위 지자체가 월 1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상위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가 인상하는 지원 금액만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고양시부터 월 20만원 수준으로 최상위 지역인 구리시와 포천시를 포함하여 격차가 크게 존재함

☞ 경기 남부에 비해 보훈예우수당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광역 지자체와 하위 지자체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총액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수준까지 조정하고, 나머지 최상위 지자체가 경기도의 추가 지원 금액만큼 감액 조정해 이를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정안임

○ 경기 남부

－ (참전명예수당)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오산시와 안성시 등 지원 수준이 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부터 양평군과 이천시, 평택시 등 15~20만원에 이르는 지역이 존재할 정도로 참전명예수당 편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광역의 추가 지원 없이 최상위 지자체 수준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광역과 기초 지자체 총액 기준으로 타 시도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수준을 고려할 때, 15만원 수준으로 조정안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광역에서 추가 지원과 함께 하위 지자체가 월 1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상위 지자체는 지원 금액 중 일부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보훈예우수당)

안산시, 수원시, 안성시 등 월 7~8만원을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부터 광주시 하남시 등 월 13만원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

☞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경기 남부 지역의 최상위 지자체는 현행 수준을 유지 및 동결하고 나머지 지자체가 2~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능함

- 그러나 기초 지자체만이 이러한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존재하므로, 전체적으로 타 시도 광역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 경기도가 보훈예우수당(월 3~5만원)과 참전명예수당(월 5~10만원)을 인상할 경우, 이와 병행하여 최상위 지자체에서 증가되는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보다 빠르게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지원 수준 총액 기준으로 편차를 줄일 수 있음

9)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초 지자체의 지원 수준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광역의 추가적인 지원과 일부 최상위 지자체의 하향 전환이 필요한 지자체 (광역 간 격차 조정 시 최상위로 조정 필요)**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광역 지자체의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각각 월 6만원씩 지원하여 타 시도에 비해 참전명예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강원도의 18개 시군은 충청남도과 함께 전국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기초 지자체별로 월 15~40만원 수준, 보훈예우수당은 월 15~25만원 수준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초 지자체의 지원 수준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 총액 기준으로 볼 때 광역의 추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일부 최상위 지자체의 하향 조정 및 서비스 전환이 필요함
- 현재 기초 지자체 지원 수준을 고려하면, 광역 지자체의 지원을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초 지자체의 통합 조정 수준을 월 25만원(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보훈예우수당)을 설정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통합 조정 목표를 각각 35만원과 30만원 수준으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동시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해야 함
 -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초과하는 일부 지자체는 광역의 증가분을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충청북도

☞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상 및 연령별 차등에 따른 기초 지자체 간 편차 조정을 위해 제도 단순화와 광역의 역할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충청북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씩 지원하여 타 시도에 비해 참전명예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충청북도의 11개 시군은 강원도 또는 충청남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참전명예수당은 기초 지자체별로 월 13~20만원, 보훈예우수당은 월 5~18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편차가 크지 않아 단계적인 조정안을 설정하고 합의를 통해 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기초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은

15~20만원 수준으로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최상위 지자체가 현행 수준을 유지 및 동결하면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동시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충청북도 역시 현행 기초 지자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광역 지자체 지원을 월 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기초 지자체와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월 30만원(참전명예수당)과 25만원(보훈예우수당)으로 설정함

11) 충청남도

☞ 자체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광역 및 기초 간 조정을 추진 예정인 지역으로 사례로 자체 조정안을 보완하여 추가 조정방안 제안

- 광역 지자체가 주도하여 광역 보훈수당 확대와 병행하여 광역 단위에서 시도 및 시군구 지원 수준을 통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참전명예수당 조정방안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 지원 수준을 합산한 총액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2024년부터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함

-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23.7.31) 안건으로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충청남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충청남도의 지원 수준은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본인) 월 3만원 / (미망인) 월 2만원

- 충남 지역 기초 지자체 15개 시군은 다른 시도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 월 20~40만원 / (미망인) 5~15만원 수준임

- (본인) ☞ 월 20만원 7개 시군, 월 25만원 4개 시군, 월 30만원 3개 시군이며, 1개 시군(서산시)이 월 40만원으로 가장 낮은 지역의 2배 수준임

- (미망인) ☞ 월 5만원 3개 시군, 월 10만원 9개 시군, 월 15만원 3개 시군



□ 충청남도 자체 조정안

- 충청남도의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자체 조정안을 마련하며 선제적으로 '(본인) 월 3만원 ⇨ 10만원 / (미망인) 월 2만원 ⇨ 5만원'으로 인상하여 광역 지자체의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지원 금액 합산 기준 조정 가능성을 높임





- 충청남도는 2024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하면서 시도 및 시군구 참전명예수당 지원수준을 통합하여 40만원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초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상향 수준을 제시
 - 7개 시군은 2024년부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
 - 4개 시군은 2024년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상향 조정
 - 3개 시군은 현행 월 30만원 수준으로 동결
- 먼저, 광역 지자체가 1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본인)의 경우 광역과 기초 합산 기준 월 4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7개 시군 월 10만원 인상(월 20만원 ⇨ 30만원), 4개 시군 월 5만원 인상(월 25만원 ⇨ 30만원)하고, 나머지 시군은 현행 유지(30만원 3개 시군, 40만원 1개 시군)를 통해 2024년부터 서산시(기존 광역 및 기초 합산 월 4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만 제외하고 모든 기초 지자체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합산금액 기준으로 월 40만원 수준으로 통합 조정에 거의 가까워짐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추가 조정방안 제안
 - 이미 월 4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서산시의 경우는 별

도 조정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역 및 나머지 기초 지자체가 2단계 추가 조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서산시의 경우, 이미 광역 및 기초 합산 총액 기준 43만원(3만원 + 40만원)수준으로, 2024년에 동결하더라도 광역 지자체 인상에 따라서 월 10만원을 포함하면 월 50만원 수준에 도달함
- 만약, 자체적으로 40만원을 지급하여 총액 기준 목표 수준을 이미 지원하는 서산시의 경우 광역 지자체 지원을 제외하면 4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미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43만원 수준으로 감액이 발생하는 상황임

○ (1안) 서산시만 2024년부터 일단 보훈수당 50만원(시도 10만원 + 시군구 4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충청남도의 보훈수당 추가 조정계획 수립을 통해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은 40만원을 상한선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며, 충청남도가 지원수준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14개 시군이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거나 충청남도의 추가 지원과 병행하여 '광역 및 기초가 각각 5만원씩 분담하여 광역 15만원 & 기초 35만원으로 인상' 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의 역할 비중이 낮은 상황을 반영하여 충남이 10만원을 추가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합산 총액 기준 50만원(광역 20만원 + 기초 30만원)으로 최종 조정 완료

☞ 그러나 이를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통합 지원수준 50만원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단위의 조정방안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광역 지자체 간 보훈수당 격차가 확대되어 지원수준 조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됨

★ (비교) 서울시의 경우, 기존 합의안대로 추진된다면 2025년부터 광역(15만원)과 기초(10만원) 지자체 통합 25만원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 충남은 광역서울의 2배인 50만원 수준이며 광역 지자체인 충남의 인상분 추가 부담 수준에 따라 10~20만원으로 서울과 맞출 수 있으나 그 비중은 통합 지원 목표수준 50만원 중 절반 이하임

- (2안) 서산시의 경우, 충청남도 보훈수당 확대에 맞춰, 자체 지원수준을 나머지 기초 지자체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기존에 40만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된 총 예산 중 감액분(1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보훈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전환 추진
 -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현금성 보훈수당과 달리 기초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차별화되는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의 각 주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확대 사례 참고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산시는 이미 43만원을 지급하여 현행 수준에서 10만원 감액하여 조정안 40만원에 맞추는 것은 총액 기준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2024년 조정 시에는 불가능
- 결과적으로, 서산시는 시도 인상분 7만원만큼 감액 및 서비스로 전환하여 총액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조정안의 목표치인 40만원을 초과하는 월 43만원을 유지하면서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서산시를 포함한 최종 조정을 위해서는 충남의 지원 수준 추가 인상이 필요하며, 이 때 앞서 1안을 중심으로 2단계 조정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합의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12) 전라북도

☞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이 낮아 인상이 필요하며, 지자체 간 편차가 크지 않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 가능한 지자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전라북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전북 14개 시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기초 지자체 간 편차가 크지 않으며,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안 마련 및 이

행 역시 가능한 상황임

-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간 차이는 없으며,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월 6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군산시와 진안군이 월 1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격차는 4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자체는 8~9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위에 해당함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전북의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타 시도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으므로 광역 간 격차 해소 차원에서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 지자체 간 격차가 최대 4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으므로, 조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최상위 지자체는 현재 월 10만원에서 유지 및 동결하고, 나머지 12개 지자체가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현재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 기준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월 12만원(2+10)으로 통합 조정됨
- 다만, 일부 가장 낮은 지자체가 10만원으로 인상이 어려울 경우,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여, 2단계로 나누어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1단계 조정 목표 수준을 월 8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가장 낮은 3개 지자체만 우선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2개 지자체는 동결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미리 인상도 가능함
 - 2단계에서는 월 1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최상위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월 8~9만원 수준인 지자체가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조정을 완성함
- 전라북도 역시 2단계로 구분하여 현행 월 2만원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각각 월 10만원과 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10+10)과 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5+10) 수준으로 통합 조정뿐만 아니라 광역 간 격차 해소 차원에서 조정도 가능함

13) 전라남도

☞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기초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정 가능한 지자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전라남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함
- 전남 22개 시군은 일부 지자체의 연령별 차등 지원 수준을 반영하면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기초 지자체 간 편차가 다소 존재하고 있으나, 기초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안 마련 및 단계적 이행 역시 가능한 상황임
 - 타 지역과 유사하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수준이 보훈예우수당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차이가 크지는 않음
 - 참전명예수당 지원 수준의 범위는 월 7~15만원으로 편차는 8만원 수준으로, 여수시, 광양시가 월 15만원으로 최상위 수준으로 동결이 필요하고, 강진군, 완도군, 신안군이 월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지원 수준의 범위는 월 5~15만원으로 편차가 10만원 수준으로, 광양시만이 유일하게 월 15만원으로 최상위에 해당하고, 구례군, 보성군 등 6개 군 지역이 5만원으로 가장 낮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7~10만원 범위에 해당하여 월 1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범위임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전남의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타 시도에 비해 지원 수준이 월 3만원으로 낮으므로 광역 간 격차 해소 차원에서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까지 단계

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기초 지자체 간 격차는 광양시가 두 가지 모두 월 15만원으로 최상위 수준이며, 광역 지자체 간 격차 해소 차원까지 고려할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통합 조정 목표수준을 설정해야 함
- (1안) 월 10만원으로 조정 목표 수준을 설정할 경우, 대부분의 시군이 참전명예수당 7~10만원, 보훈예우수당 5~10만원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여수시와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동일 시점에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2단계로 구분해 7~8만원 수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 이 경우, 가이드라인의 예외적 상황을 적용하여, 광양시의 경우 불가피하게 조정 목표치와의 차액인 5만원 수준을 감액하고 이를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광역 지자체가 지원 수준을 인상할 경우 이와 병행하여 인상액만큼 감액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감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2안)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15만원을 조정 목표치로 설정한다면, 다수의 기초 지자체가 2~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합산 총액 기준으로 월 20만원 또는 25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충청남도의 사례와 같이 전라남도가 월 3만원을 10만원 수준으로 조기에 인상하고, 이와 병행하여 여수시와 광양시는 동결함

14) 경상북도

☞ **대상별 차등 지원 조정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안 합의 및 단계적 이행 가능한 지자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경상북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초 지자체에서도 참전명예수

당 지원 대상을 6.25와 월남 참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은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을 지원하여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경북 23개 시군(군위군 편입으로 22개 시군)은 다수 지자체가 참전 대상별 차등 지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에서 나타나는 기초 지자체 간 편차가 조정안 마련 및 단계적 이행 가능한 범위임
 - 참전명예수당 지원 수준 범위는 월 10~15만원으로 편차는 5만원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월 10만원으로 단계적 조정이 가능함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월 7~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경시가 유일하게 월 15만원으로 최상위에 해당하므로 단계적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범위임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정안 제안

- 참전 대상별 차등 지원 관련 조정
 -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수 기초 지자체에서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6.25와 월남 참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간 편차 조정 차원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 수준이 높지 않은 광역은 상향 조정하여 월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이와 동시에,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연계 조정 및 기초 지자체 간 편차 해소 차원에서 낮은 지원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 경북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차등 지원에 대한 조정과 함께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광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5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함
- 기초 지자체 간 격차는 문경시가 두 가지 모두 월 15만원으로 최상위 수준이며, 광역 지자체 간 격차 해소 차원까지 고려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통합 조정 목표치 설정을 제안함

-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10~15만원으로 최상위 지자체들은 현행 15만원 수준에서 동결하고 나머지 시군이 동일한 시점에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거나, 2단계로 구분해 12~13만원 수준을 거쳐 최종 월 15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문경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7~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광역 차원에서 경상북도의 신규 지원에 따라 통합 조정 목표 수준을 10만원으로 설정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15만원(5+10) 수준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문경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10만원으로 동일한 시점에 조정하고, 문경시는 경상북도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감액되지 않도록 자체 지원 중 일부를 서비스로 대체 및 전환하여 보훈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광역 지자체 신규 지원 없이 보훈예우수당 조정 목표치를 월 15만원으로 설정한다면, 다수의 기초 지자체가 2~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15) 경상남도

- ☞ **자체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광역 및 기초 간 조정을 추진 예정인 지역으로 사례로 자체 조정안을 보완하여 추가 조정안 제안을 통해 조정**
- 광역 지자체가 주도하여 광역 보훈수당 확대와 병행하여 광역 단위에서 시도 및 시군구 지원 수준을 통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방안을 추진 예정임
- 제90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23.9.19) 안건으로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확인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지원 수준을 합산한 총액 기준을 마련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원 현황

- 경상남도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으로 타 시도 지원 수준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임
- 경남 기초 지자체 18개 시군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월 10~18만원 수준이며 최상위 지자체인 산청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10~15만원 수준임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5~10만원 범위로 타 시도 기초 지자체에 비해서 편차가 크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조정 가능한 수준임

□ 경상남도 자체 조정안

-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각각 7만원과 12만원으로 구분했던 연령별 차등 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광역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12만원 단일 수준으로 조정
 - 기초 지자체별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추진
- 기초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안
 - 10~18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18개 시군의 참전명예수당 평균 수준인 13만원으로 우선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논의함

창원·김해 남해·하동	양산	사천·밀양 의령	진주·통영·거제·함안 창녕·고성·함양·거창·합천	산청
10만원	12만원	13만원	15만원	18만원

- 5개 시군은 월 10~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
- 나머지 시군은 유지 및 동결하여 우선 월 13만원 수준으로 1단계 조정

□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추가 조정방안 제안

-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는 적절하며, 참전명예수당 1단계 자체 조정 이후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따라 이후 조정안 목표 수준을 다수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월 15만원 또는 최상위 지자체인 산청군 지원 수준 18만원으로 설정 가능함
- (1안) 광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월 12만원을 고려하면 기초 지자체가 월 15만원 수준으로 조정 목표를 설정할 경우 합산 총액 기준으로 월 27만원에 해당

하며 이는 광역 간 격차를 고려할 때 조정 가능한 적절한 수준임

- 이 경우, 13만원 수준으로 1단계 조정이 이루어진 8개 시군이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청군의 경우 광역 지자체 지원 수준과 합산한 총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우선 동결한 상태에서 유지함
- 다만, 경상남도의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광역 지자체가 참전명예수당 지원 수준을 서울특별시 등 타 시도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1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합산 총액 기준으로 30만원(15+15)이 조정 목표로 설정되어 산청군은 총액 감소 없이 월 15만원으로 감액하고 감액분만큼 서비스로 전환하여 지원 추진
- (2안) 기초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조정 목표 수준을 월 18만원으로 설정하면, 산청군은 동결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자체가 13~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일시에 인상하거나 15만원 수준을 거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가능
 - ☞ 광역 지자체 인상이 없을 경우,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월 30만원(12+18)으로 4:6 수준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는 결과임
-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타 시도 지원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최상위 지자체 지원 수준인 월 10만원을 목표 수준으로 설정하고, 5~9만원에 해당하는 시군이 이를 7만원, 10만원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 광역 지자체 역시, 현재 월 5만원인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광역과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20만원(10+10) 수준이며 이는 광역 간 격차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임
- 결론적으로, 광역 지자체의 추가 상향 조정(참전명예수당 3만원, 보훈예우수당 5만원 수준)과 더불어 기초 지자체 간 격차를 조정할 경우, 경상남도의 경우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합산 총액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30만원, 보훈예우수당 20만원으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16.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 지자체 간 조정안 도출 및 단계적 이행 시 조정 필요한 광역 지자체